GS칼텍스 통합노동조합 규약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의 명칭은 **GS칼텍스 통합노동조합**이라 한다.
이하 본 규약에서 "조합"이라 한다.

제2조【목적】

조합은 조합원의 자주적 단결을 바탕으로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고용안정, 공정한 인사·평가 문화 확립, 합리적인 복리후생,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전라남도 여수시**에 둔다.
구체적인 소재지는 위원장이 정하여 조합 업무 및 관계기관 신고에 사용한다.

제4조【법인격】

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으로서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설립신고를 하고, 필요한 경우 법인으로 등기할 수 있다.

제2장 사업

제5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 및 개선에 관한 사업
2. 임금, 복리후생, 평가, 승진, 전보, 교육, 고용안정에 관한 사업
3. 안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 조성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권익 보호 및 고충 처리에 관한 사업
5.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6.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사업
7. 조합원의 조직 확대 및 교육·홍보 사업
8. 조합원 개인정보 및 가입사실 보호에 관한 사업
9. 기존 노동조합 등 노동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업

10. 기타 조합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조합원

제6조【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은 GS칼텍스 및 조합이 정한 관련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로 구성한다.

② 조합은 사무직, 생산기술직, 연구직, IT직, 경리·회계직, 비서직, 기타 직군을 직군명만으로 일률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한다.

③ 기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조합의 목적과 규약에 동의하는 경우 조합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다.

1. 사업주
2. 사업의 경영담당자
3.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4.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
5. 기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조합원 자격이 제한되는 자

⑤ 제4항 해당 여부는 직위나 직군명만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실제 담당 업무, 권한, 인사·노무 의사결정 관여 여부, 사용자 이익대표성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제7조【가입】

① 조합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가입신청 절차에 따라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입신청자는 조합 규약을 확인하고,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직접 가입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가입신청자의 자격 및 신청 내용을 확인한 후 가입을 승인한다.

④ 가입 승인 시점부터 가입신청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가진다.

제8조【조합원의 권리】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조합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조합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권리
4. 조합으로부터 권익 보호 및 고충처리 지원을 받을 권리

5. 조합의 회의, 교육, 홍보, 각종 사업에 참여할 권리
6. 조합 규약 및 의결사항에 따라 보장되는 기타 권리

제9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조합 규약 및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
2.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협력할 의무
3.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지 않을 의무
4. 조합비 납부 의무
5. 조합 내부정보 및 다른 조합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의무
6. 기타 조합원으로서 신의성실에 따라 행동할 의무

제10조【탈퇴】

① 조합원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조합을 탈퇴할 수 있다.

② 탈퇴하고자 하는 조합원은 조합이 정한 방식에 따라 탈퇴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③ 조합은 탈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자격상실】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한 경우
2. 사망한 경우
3. 해고, 퇴직 등으로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

 단,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조합원 자격을 유지.
4. 제6조 제4항의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5. 제재 절차에 따라 제명된 경우

제12조【조합원 가입사실 및 개인정보 보호】

① 조합은 조합원의 가입 사실과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② 조합은 조합원 명단, 가입신청 정보, 연락처, 소속, 사번, 기타 조합원 식별정보를 회사 또는 외부에 공개하지 아니한다.

③ 조합원 정보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최소한의 담당자만 접근할 수 있다.

④ 조합은 조합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시행한다.

⑤ 조합의 임원, 간부 및 정보 접근 권한이 있는 자는 조합원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조합원 정보 유출 또는 무단 제공 행위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한다.

제4장 기관

제13조【기관】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둔다.

1. 총회
2. 운영위원회
3. 회계감사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이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년 1회 개최한다.

④ 임시총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 및 변경
2. 임원의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4. 결산 승인
5. 단체협약 체결에 관한 중요사항
6. 조합비에 관한 사항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에 관한 사항
8. 기금 및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조합 운영상 중요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소집 및 의결】

① 총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 소집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조합원에게 공고하는 방식으로 한다.

③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조합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규약 변경, 임원 해임, 합병, 분할, 해산 등 중요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총회는 대면,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총회 다음의 의결 및 집행기관으로서 조합의 일상 업무를 심의·집행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조합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3. 가입 승인 및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
5. 조합 활동 계획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자문 노무사,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 선임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임원

제18조【임원】

①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② 조합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부위원장 1명 이상
3. 회계감사 1명 이상

③ 조합은 필요에 따라 사무국장, 조직담당, 홍보담당, 법률담당 등 실무 담당자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의 실무 담당자는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⑤ 조합 설립 초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일부 임원의 겸임 또는 직무대행을 정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총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조합의 설립신고, 변경신고, 대외 공문, 단체교섭, 조합원 보호, 기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20조【부위원장】

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

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부위원장이 2명 이상인 경우 직무대행 순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1조【사무업무】

① 조합의 문서, 회의, 조합원 관리, 홍보, 가입신청, 대외 연락 등 사무업무는 위원장이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사무국장 또는 실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사무국장 또는 실무 담당자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정한 조합원이 해당 업무를 수행한다.

제22조【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조합의 회계와 재산상황을 감사한다.

② 회계감사는 6개월마다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③ 회계감사는 조합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인한다.

제23조【임원의 선출】

① 임원은 총회에서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총회의 찬반투표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노동조합 임원의 자격은 규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임원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정한다

④ 임원 선출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가 정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③ 보궐선거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25조【임원의 해임】

① 임원이 규약을 위반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② 임원 해임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회의와 의결

제26조【회의 방식】

조합의 회의는 대면회의, 화상회의, 온라인회의, 서면결의 등 조합 운영상 필요한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27조【의결권】

① 조합원은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② 의결권은 조합원 1인 1표로 한다.

제28조【회의록】

① 총회 및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②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의결 결과를 기재한다.

③ 회의록은 위원장 또는 회의 주재자가 보관한다.

제7장 단체교섭 및 쟁의

제29조【단체교섭】

① 조합은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②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 시 교섭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30조【쟁의행위】

① 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② 쟁의행위는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한 찬반투표를 거쳐 조합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쟁의행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 법령과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8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재정】

조합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조합비
2. 특별부과금
3. 기부금 및 후원금
4. 기타 조합의 정당한 수입

제32조【조합비】

① 조합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② 조합 설립 초기에는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 조합비 납부 시기, 금액, 유예 여부를 정할 수 있다.

③ 조합비는 조합 운영, 조합원 보호, 법률·노무 자문, 홍보, 교육, 기타 조합 목적 달성을 위해 사용한다.

제33조【회계연도】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설립연도의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4조【예산과 결산】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재산 관리】

① 조합의 재산은 조합 명의로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 재산의 처분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③ 조합의 재산은 조합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장 규율 및 징계

제36조【징계】

조합원 또는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1. 규약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2. 조합의 명예와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3. 조합원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거나 무단 제공한 경우
4. 조합의 의결사항을 고의로 위반한 경우
5. 조합 활동을 방해하거나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제37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고
2. 권리정지
3. 직무정지
4. 제명

제38조【징계 절차】

① 징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징계 대상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제명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0장 규약 변경 및 해산

제39조【규약 변경】

① 규약은 총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② 규약 변경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규약 변경 후 관계 법령상 신고가 필요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한다.

제40조【해산】

조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해산한다.

1.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한 경우
2.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조합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별도 정함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제11장 보칙

제42조【자문】

① 조합은 설립 및 운영 과정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무사,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 조합은 필요에 따라 자문 노무법인 또는 자문 노무사를 선임할 수 있다.

제43조【기밀유지】

① 조합의 임원, 간부 및 조합 업무 담당자는 조합 운영 과정에서 알게 된 조합원 정보, 가입신청 정보, 내부 논의사항, 전략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조합원 정보 보호의무는 해당 직책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계속된다.

제44조【준용】

본 규약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관계 법령, 총회 의결 및 일반 노동조합 운영 관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6년 9월 18일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신고】

조합은 본 규약에 따라 **2026년 9월 23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접수**한다.

제3조【초대 임원】

조합 설립 당시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임원은 본 규약에 따라 선출된 것으로 본다.

제4조【초대 임원의 임기】

초대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로부터 제24조에서 정한 임기까지로 한다.

제5조【설립 초기 운영】

조합 설립 초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초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식 운영체계가 확정될 때까지 위원장은 가입 승인, 대외 신고, 홈페이지 운영, 조합원 관리, 자문계약, 기타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조합비에 관한 경과조치】

조합 설립 초기의 조합비 금액, 납부 시기 및 납부 방식은 총회 또는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그 전까지는 조합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설립준비금 또는 임시 운영비로 충당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노무법인】

조합은 설립 및 운영의 적법성과 안정성을 위하여 자문 노무법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그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